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058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건축물관리법」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5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조(「국토기본법」의 개정)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7조제5항 중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7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고" 를 각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제61조제4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10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11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43조의6제6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 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5항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 제13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주택법」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마련한 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기준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운용 상황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6조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4항・제16조제3항・제102조제3항・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8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6항・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9조의 개정규정, 제10조의 개정규정 및 제14조 중 「주택법」 제48조제3항・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 ④ (생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	⑤
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u>국토교</u>	<u>해당 지</u>
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	<u> 방자치단체</u>
<u>당 지방자치단체</u> 의 조례로 정하	
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	4
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② (생	평가지표 및 기준)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③
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	
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	<u>통보</u>
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
	<u>\$\circ\u00e4</u>)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	3
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하며,	<u>통보</u>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① (생 략)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	2
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하고	<u>통보</u>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 ④ (생 략)	설치 및 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⑤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u>운용</u>	
<u>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	<u>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u>
	<u>구할 수 있다</u>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	4
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
구역의 지정·고시) ①·② (생	구역의 지정·고시)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	③
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	<u>통</u>
<u>고</u> 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	<u> </u>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
준) ①·② (생 략)	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	③

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 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 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 진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u>보고</u>하여야 한 다.

	<u>통보</u>
제	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ıì →
	<u>제출</u>
제	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제출
	<u>ਾਂ 1 ਦ</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 ④ (생 략)	및 운용) ① ~ ④ (현행과 같
	<u></u> 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5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u>운용상황</u>	<u>운용상황</u>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u>수 있다</u>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	6
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	
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통보</u>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	4
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	
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4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u>운용 상황을</u>	운용상황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u>있다</u>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신고) ①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	
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	
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u>보고</u>	② <u>통보</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③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	
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	
개할 수 있다.	.
1. 제1항 후단에 따라 <u>보고</u> 받은	1 <u>통보</u>
정보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	2.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
<u>보</u>	은 정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제61조(보고·검사 등)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 이 사항에 대하여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 제출받은 정보
제61조(보고·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제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②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	
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	
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u>보고</u> 하여야 하	<u>제출</u>
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	<u>제출</u>
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	4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에게 <u>보고</u> 하고, 특별시장·광	<u>통보</u>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이	<u>통보</u>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	4
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	
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이 경	<u>통보</u>
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의 해제 등) ① ~ ⑤ (생	지역의 해제 등)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	6
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
	<u> 통보</u>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생 략)	실적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	②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제출</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⑤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	
황의 <u>보고</u> , 실적확인서의 발급,	<u>제출</u>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 ④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	5
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하여금 도시・주	
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	
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계	
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u>수 있다</u>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	③
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	
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u>운영할</u>	<u>운영할</u>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
<후단 신설>	게 마련한 기준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
	은 기준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승
	인권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	③
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교체지시 사실을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u>통보</u>

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제43 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u>운용 상황을 국</u><u>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u>하여야한다.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운용 상황에 관</u>
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